



<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>

■ 2021년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 내국인도 모두 "PCR 음성 확인서"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【미제출자】

- ◇ (외국인) 입국 불허
- ◇ (내국인)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(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)

【부적합 서류 제출자】

- ◇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 제출자는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- 1. "PCR 음성확인서" 적합 기준

구분	적합 기준
①검사방법	▶ PCR, LAMP, TMA,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검출검사(PCR, LAMP 등)에 한해 인정하며, <u>항원·항체 검출검사</u>
	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
②발급시점	▶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* 예시) '21.3.10. 10:00시 출발 시 '21.3.7.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③필수기재	▶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④검사결과	▶ 검사 결과가 '음성' 일 것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⑤발급언어	▶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*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인정.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
2. 동반 영유아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여부

○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